

산학협력 중점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제정 2013. 3. 1. 개정 2016.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경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 교원인사규정 제2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한 전임교원 중 비정년트랙 산학협력중점교원(이하 “산학협력중점교원” 이라 한다)의 임용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인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임용자격)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인사규정 제12조의 교수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교육경력연수·연구실적연수는 산업체경력으로 대치할 수 있다.
2.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취업 지원, 기술이전 등을 중점 추진할 수 있는 자
3. 대학에서 요구하는 분야에 대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

제4조(임용절차) 산학협력중점교원은 공개채용절차에 따라 임용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절차에 따라 임명될 수 있다.

제5조(임용기간) ① 산학협력중점교원이 근무할 수 있는 총 임용기간은 신규임용 및 재계약 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한다.

② 신규임용은 1년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재계약은 1년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임용기간이 만료된 산학협력중점교원이 임용기간 중 근무성적이 현저히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년트랙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시행지침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임용계약) ① 대학의 장은 임용권자로부터 계약당사자로서의 권한을 위임받아 산학협력중점교원의 각종 경력을 고려하여 임용계약을 체결한다.

② 임용계약의 내용에는 임용직급, 계약기간, 보수,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재계약조건 및 절차, 기타 등을 포함한다.

③ 임용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계약 당사자 쌍방의 합의하에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체결된 계약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계약해지) ①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임용된 교원은 학기 중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다만 학기 중이라도 신체·정신적 이유로 업무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중점교원이 계약기간 중 법령, 규정 또는 계약에 정한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임용 시 제출한 각종 증명서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의무) ① 산학협력중점교원은 학부(학과) 및 담당부서에 소속되며, 학사관련 행정업무 협조 등 본 대학 교원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중점교원은 대학의 장의 승인 없이 타 기관에서 강의할 수 없다.

③ 산학협력중점교원은 매년 12월말에 업무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임무)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산·학·연 협력사업의 기획 및 관리
2. 산학협력협의회 추진 및 관리
3. 기술지도, 기술개발, 기술이전사업 등의 추진 및 관리
4. 공용장비운영사업 추진 및 관리
5. 현장실습, 인턴십 등을 통한 산학협력 인력양성
6. 취업·창업 관련 업무
7. 기타 산학협력 활성화 업무 추진

제10조(신분보장) ①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임용기간 중 본 대학 전임교원의 책임과 신분을 보장한다.

② 산학협력중점교원은 계약기간 중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인정관과 인사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정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소속 학부(학과) 및 담당부서의 개폐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삭제 <2016.1.6.>

제12조(평가대상) 교원업적평가의 대상은 본 대학 산학협력중점교수로 한다. <신설2016.1.6.>

제13조(평가영역) ① 교육/학생지도분야는 교육활동, 학생지도활동 영역으로 한다. <신설 2016.1.6.>

② 학과발전분야는 학생유치활동 영역으로 한다. <신설 2016.1.6.>

③ 산학협력분야는 산학협력활동 영역으로 한다. <신설 2016.1.6.>

④ 취업분야는 학생취업활동 영역으로 한다. <신설 2016.1.6.>

⑤ 평가점수 가감분야는 공과평가 영역으로 한다. <신설 2016.1.6.>

⑥ 대학발전기여도 분야는 교수특별성과업적 영역으로 한다. <신설 2016.1.6.>

제14조(평가항목) ① 규정 제13조의 제1항 평가영역의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신설 2016.1.6.>

1. 교육/학생지도 분야는 교육활동(강의평가)과 학생지도 활동(멘토링지도, 재학생 충원율)으로 한다. <신설 2016.1.6.>

② 규정 제13조의 제2항 평가영역의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신설 2016.1.6.>

1. 학과발전분야는 학생유치활동(입시지원율, 신입생등록률)으로 한다. <신설 2016.1.6.>

③ 규정 제13조의 제3항 평가영역의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신설 2016.1.6.>

1. 산학협력분야는 산학협력활동(산학협력협약 체결 실적, 가족회사 및 산학협력 체결업체로의 취

업실적, 가족회사 협약 체결 실적, 현장실습 참여학생 실적, 산학협력견학지도, 산학협력 관련 사업 유치, 사업제안서 작성 및 신청)으로 한다. <신설 2016.1.6.>

④ 규정 제13조의 제4항 평가영역의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신설 2016.1.6.>

1. 취업분야는 학생취업활동으로 한다. <신설 2016.1.6.>

⑤ 규정 제13조의 제5항 평가영역은 상훈실적, 징계사항으로 한다.<신설 2016.1.6.>

⑥ 규정 제13조의 제6항 평가영역은 교수특별성과 항목에 산학협력 특별성과를 평가한다. <신설 2016.1.6.>

제15조(평가분야) 각 평가분야, 평가영역,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의 별도의 교원업적평가 세부항목별 평가방법(별첨1)에 따른다. <신설 2016.1.6.>

제16조(평가기간) 평가는 1년 단위로 하되, 그 업적평정 기간은 전년 11월1일부터 당해년 10월31일까지로 한다, 단 제1학기말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은 8월31일까지 평가기준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16.1.6.>

제17조(평가자료 제출) ① 교수는 교원업적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정해진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2016.1.6.>

② 담당부서는 제1항의 교원업적평가보고서를 본 대학 교원업적평가규정 제6조에 의거한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신설 2016.1.6.>

제18조(심의) ①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심의 회부 후 15일 이내 교원업적평가 보고서 및 관련자료를 심의한다. <신설 2016.1.6.>

②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교원업적평가보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 작성자와 협의하여 이를 수정할 수 있다. <신설 2016.1.6.>

③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교원업적 평가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적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6.1.6.>

④ 교원업적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즉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6.>

제19조(평가의 유보) 공식적인 해외출장, 휴직 등으로 6개월 이상 연속으로 교수활동을 수행하지 못한 교수에 대해서는 대상 학년도의 평가를 유보할 수 있다.<신설 2016.1.6.>

제20조(이의신청) ① 교원업적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후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교수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1.6.>

②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재심의를 요청한 교수에게 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6.1.6.>

제21조(자료보안) 이 규정에 따라 평가업무에 참여하였던 교직원들은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본래의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6.1.6.>

제22조(평가결과의 활용) 업적평가의 결과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에 활용될 수 있다. <신설 2016.1.6.>

1. 재임용심사
2. 연봉 및 성과급 등 보수의 결정
3. 우수업적 교수, 특별업무 전담교수 등의 선정
4. 포상 및 연수 기회 부여
5. 기타 교원의 인사관리 관련 사항

제23조(재임용) 재임용은 업적평가 합산 총점 500점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6.1.6.>

제24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교원인사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신설 2016.1.16.>

부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별첨1)

[산학협력중점교원 업적평가 기준]

분야	영역	항목	세부항목	점수				
교육/ 학생지도 분야 (80점)	교육 활동	강의평가	A~E 5단계	30점 (A:30점, B:25점, C:20점, D:15점, E:10점)				
	학생 지도 활동	멘토링지도	진로상담 등 70회 이상이면 20점 부여	최고 20점 산출식 - (연상담횟수/70)*20, 최대 20점 부여				
재학생 총원율(학과총원 률)		정원내 학생수 : 고등교육통계 4.1, 10.1일자 평균	30점 산출식 - (정원내학생수/편제정원)*30					
학과발전 분야 (30점)	학생 유치 활동	입시지원율		최고 10점 - 입학 학과평가 기준에 준함				
		신입생등록률	대학평균 등록률 이상 : 20점 대학평균 등록률 -10% 이상 : 15점 대학평균 등록률 -10% 미만 : 10점	최고 20점 산출식 - (최종합격자 등록자수/입학정원)*100))				
산학협력 분야 (620점)	산학 협력 활동	산학협력협약 체결 실적		최고 30점(건당 1점)				
		가족회사 및 산학협력 체결업체로의 취업실적		최고 30점(건당 3점)				
		가족회사 협약 체결 실적		최고 30점(건당 3점)				
		현장실습 참여학생 실적		최고 10점(건당 2점)				
		산학협력지도 활동	산업체 연계 작품전지도, 캠프 톤 디자인 지도 등	최고 10점(건당 2점)				
		산학협력견학지도	산업체 현장방문 견학 및 시설 탐방지도	최고 10점(건당 2점)				
		산학협력관련사업유치 (국책사업, 기관유치, 교외연구비 수주 포함)	10억 이상/년		단독	과제책임자	참여연구원	
			7억 이상/년		350	320	150	
			5억 이상/년		300	280	130	
			3억 이상/년		250	230	110	
			1억 이상/년		200	180	80	
			0.5억 이상/년		150	130	60	
			사업제안서 작성 및 신청	50억 이상		150	130	70
				30억 이상		120	100	50
10억 이상				100	80	40		
5억 이상				80	60	30		
3억 이상		60		40	20			
1억 이상		40		30	10			
0.5억 이상		20	15	5				
0.5억 이하		10	8	2				
취업분야 (200점)	학생 취업 활동		취업인원 * 5점	최대 200점				
평가점수 가감분야 (20점)	공과 평가	상훈실적	A~G 7단계	최대 20점 A(훈·포상 : 20점), B(대통령표창 : 17점), C(국무총리표창 : 13점), D(장관이상 표창, 학술상 : 10점), E(교내표창, 광역단체장상 : 8점), F(기타 공공기관표창 : 5점), G(기타표창 : 2)				
		징계사항	A~D 4단계	-20점 A(정직 : -20), B(감봉 : -15), C(견책 : -10), D(경고 및 주의 : -5)				
대학발전 기여분야 (50점)	교수 특별 성과 업적	산학협력특별성과		50점(+20)				
총 계				1,000점				

※ 총점 500점 미만자의 경우 재임용 탈락